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24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 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연구개발특 구의 육성에	2202040	조승래의원	'24. 7. 19.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	2202182	정부	'24. 7. 24.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4.9.4.) 상정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24.
 - 9. 4.)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9. 9.)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 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유치를 위한 종합적 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 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유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지원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에 추가함(안제6조·제6조의2·제10조·제48조).
- 나. 특구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 다. 특구내 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및 「출입국관리법」상의 사증발급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22조의3 및 제25조의2).
- 라. 기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로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6조의2제7항·제16조의7제7항).

- 마. 실증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임시허가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 우「감사원법」제34조의3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함(안 제71 조의2 신설).
- 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양성에 관한 사항"을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을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로 한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5의3.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제14호 중 "투자유치 및 정주를"을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구에 있는 대학에"를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로, "양성하기"를 "양성·유치하기"로 한다.

제16조의2제7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를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로,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6항까지를"을 "제7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를 "제12항에"로 하고, 같은 조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제13항에"를 "제14항에"로 하며, 같은 조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1항에"를 "제12항에"로,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를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5항까지에서"를 "제16항까지에서"로 하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제16조의2제11항에"를 "제16조의2제1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6조의2제12항"을 "제16조의2제13항"으로, "제13항을"을 "제14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6조의2제11항에"를 "제16조의2제12항에"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2제16항에"를 "제16조의2제17항에" 로 한다. 제16조의7제7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 13항) 본문 중 "제12항에"를 "제1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종전 의 제15항) 중 "제14항까지에서"를 "15항까지에서"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8제1항제4호 중 "제16조의7제10항을"을 "제16조의7제11항을" 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외국인학교"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 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1.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 2. 내국인의 입학비율

제5장에 제22조의2·제22조의3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의3(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 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

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바목 중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을 "전문 인력·사업화 지원 인력·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56조제3호 중 "제16조의2제9항에"를 "제16조의2제10항에"로 한다.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 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제4호 중 "제16조의2제9항에"를 "제16조의2제10항에"로 한다.

제76조제2항제7호 중 "제16조의7제13항을"을 "제16조의7제14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생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2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5		
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			
업화 지원 인력의 <u>양성에 관</u>	양성 및		
<u>한 사항</u>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		
	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		
<u><신 설></u>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		
	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		
	에 관한 사항		
<u> <신 설></u>	<u>5의3.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u>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		
	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외국인의 <u>투자유치 및 정주</u>	7		
(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		
관한 사항	<u>치•활용을</u>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생 략)
 -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3. (생 략)
 -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5.·16. (생략)

③ ~ ⑧ (생 략)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 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 기업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 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 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 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 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 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① ~ ⑥ (생 략)

<신 설>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현 행과 같음)

 - 1. ~ 13. (현행과 같음)
 - 14.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15.·16.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 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 기업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 축) ① -----

----특구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에-----

----양성·유치하기-----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① 실증특례의 신청이 <u>제6항에</u> 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u>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u>

<u>⑧</u>· <u>⑨</u> (생 략)

①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 이 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
<u>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u>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
의 · 의결할 수 있다.
<u> ⑧</u>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291 1.
⑨· 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①
<u> </u>

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 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 터 <u>제6항까지를</u>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① (생략)

① 관계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2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 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 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 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제 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 ① 제4항에도 불구하고 <u>제11항</u> 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u>제12</u> 항부터 <u>제14항까지의</u>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6 제1항부터 <u>제15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② (생 략)
 -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제16조의2제11항에 따라 법령

<u>제14항에</u>
<u>⑯</u> 제12항
<u>에</u> <u>제13</u>
<u>항부터 제15항까지의</u>
<u>.</u>
<u> ⑰제16항까지에서</u> -
·.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 ② (현행과 같
<u>수</u>)
③
-제16조의2제12항에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 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필요한 절차는 제16조의2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을 준용하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 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u>제16조의2제11항에</u> 따른 실 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⑥ ~ ⑨ (생 략)

4
제16조의2제13항
<u>제14항을</u>
⑤
<u>제16조의2제12항에</u>
<u>.</u>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 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2. (생략)
- 3. <u>제16조의2제16항에</u> 따른 심 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4. (생략)
- ② ~ ④ (생 략)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저

① ~ ⑥ (생 략)

<신 설>

세16조의5(실증특례 지정의 취소)
①
<u>.</u>
<u>.</u>
1.·2. (현행과 같음)
3. <u>제16</u> 조의2제17항에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 · 제품의 내용 ·
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u>⑦</u> ~ <u>⑩</u> (생 략)

③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u>제12</u> <u>항에</u>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 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 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 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 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⑭ (생 략)

⑤ 제1항부터 <u>제14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 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
의・의결할 수 있다.
<u>⑧</u> ~ <u>③</u> (현행 제7항부터 제1
2항까지와 같음)
<u>頃</u>
<u> 히-에</u>
<u>⑤</u> (현행 제14항과 같음)
<u>⑯</u> <u>15항까지에서</u>

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 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16조의7제10항을 위반하여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5. (생 략)
- ② ~ ⑤ (생 략)제5장 <u>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u><u>활 여건 개선</u>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u>「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u>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7제11항을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장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
성・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
영 지원 등) ①
<u>「초·중등교육법」 제60조</u>
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u> "외국인학교"라 한다)</u>
· ② <u>「초·중등교육법」 제60조</u>
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
성・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 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 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 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1.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 2. 내국인의 입학비율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의2(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
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
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 지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 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

<신 설>

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관 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 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 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우 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연구소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정할 수 있다.

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 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 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 마. (생 략)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교육

사.·아. (생 략)

3. ~ 5. (생략)

② (생략)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 지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일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생략)
- 3. <u>제16조의2제9항에</u> 따른 시 험·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u>한다.</u>
세48조(사업) ①
1. (현행과 같음)
2
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전문 인력·사</u>
업화 지원 인력·해외 고
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아.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세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1.·2. (현행과 같음)
3. <u>제16조의2제10항에</u>

토시브자과이 화이으 바이아

<신 설>

<신 설>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 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 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 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 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 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 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 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 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 을 묻지 아니한다.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 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제) -----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	으로 본디	- .	

- 1. ~ 3. (생략)
- 4. <u>제16조의2제9항에</u>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임직원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 략)
 - 7. <u>제16조의7제13항을</u>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 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 우는 제외한다)
 - 8.·9. (생략)
 - ③ · ④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6조의2제10항에</u>
세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8.·9.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